목 차

(09.11월)

(무배당)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보험약관(2권-자동차)은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의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의 자동차관련 담보를 가입하신 고객에 대하여 교부하여 드립니다.

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기타 제도성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보험약관(1권)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 3-1. 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 3-2.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 3-3. 기타사항

특별약관

- 1. 자동차관련 특별약관
- 1-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3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4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5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6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7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9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10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1-11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12.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13.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14.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 1-15. 자동차취급업자 운전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Ⅱ
- 1-16. 상해간병비지원 특별약관Ⅱ
- 1-17. 자녀교육비지원 특별약관
- 1-18. 성형 치아보철비용지원 특별약관
- 1-19. 쾌유기원 및 안심용품지원 특별약관
- 1-20. 상급병실료지위 특별약관
- 1-21.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 1-21-1.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 1-22. 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 1-23. 차량 신규등록비용지원 특별약관
- 1-24.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지원 특별약관
- 1-25. 초과수리비용지원 특별약관
- 1-26. 교통비지원 특별약관
- 1-2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 1-28.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 1-29. 애니카 패밀리서비스 특별약관
- 1-30.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 1-31. 3년 신가보상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 1-32. 외제차 렌트비용 특별약관
- 1-32-1. 외제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 1-33. 외제차 운반비용 특별약관
- 1-34.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Ⅲ

- 1-34-1.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곾Ⅲ
- 1-35.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1-36.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과
- 1-37.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38. 대인사고처리 수습지원금 특별약관
- 1-39. 대물사고처리 수습지원금 특별약관
- 1-40.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 1-41. 애니카라이프 특별약과
- 1-42. 애니카 안심지원서비스 특별약관
- 1-43.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1-44 신용카드이용 보혂료납입 특별약관
- 1-4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별 표

-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병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3-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조 (가입대상)

.~t 0628-10601653-13513209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제2조 (자동차관련 담보의 구성)

-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 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7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 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 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이들 7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제16조 (용어정의) 제16항)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③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3-2.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C
C
0
C
т
Ц
C
т
_
C
C
T
0
Č
-
C
C
à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그
	손해가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l 대물배삿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자농자상해 │	
무보험자동차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에 의한 상해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제3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자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제5조 (보험기간)의 규정에 따

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 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낙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4조 (청약철회)

-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자지급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가 위 제2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5조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9	
3209	
351	
-13	
33	
016	
960	
Ţ	
0628	
0	

구 분	보험기간
일 반적 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제 자동차보험에 처음 기입하는 자동차 의 (제16조(용어정의) 적 제1항)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제6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1) 계약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 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 2.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 3.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차명자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4.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 5.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 던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 6.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 재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 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의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지다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1.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 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 2.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 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3.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 물을 싣게 된 사실
 - 4.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 를 발생시키는 사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ㄱ.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 ㄷ.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 ㄹ.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 ㅁ.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 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 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 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 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①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 중 통칙'및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의 자동차담보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 가입자 특성요율 우량할인 납입할 기 본 (보험가입\^) 특 별 특 약 불량할증 요 율 요 율 보 험 료 경력요율 ± 보험료 8 율 교통법규위반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경력요율)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 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8 육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②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과오납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제8조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Û

사고접수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Û

보혐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Û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상책임 유무 결정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Û

보험금 산정

Û

보험금 지급 합의 🔊

T,

보험금 결정지급

Û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제9조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 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급융분쟁조정위 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60²⁶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제1항의 절 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 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 니다
 -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 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 2)의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3-2. 담보증임 - 대인배상]

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06:28-1960/633-135/3209

3-2.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제10조 (배상책임 -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 I (책임보험)'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 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 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0658

②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 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 보험금기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 1.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그.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 을 포함합니다)
- L.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ㄷ.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3.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을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헊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⑤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제16조(용어정의) 제2항)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인배상I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파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상해'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 1)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 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 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자동차1】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 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별표-자동차1】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자기신체사고보상액

공제액

- ④ 위 제3항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사망보험금

2.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3.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후유장해 보험금

- ⑤ 위 제3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 II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제4항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제16조(용어정의) 제3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 있는 금액

2.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제4항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 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 는 금액

- 2) 피보험자의 범위
-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10조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 2. 위 제1항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16조(용어정의) 제4항)
-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 다.

제12조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과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별표-자동차1]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지 급 보험금 = <mark>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mark> + 비용 - 공제액

-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ㄱ.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 L.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기.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 II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제16조 (용어정의)
 제3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상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리. 배상의 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어머 지급 받은 금액
- □.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환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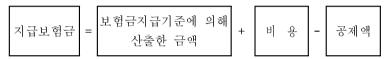
-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 2. 위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보통약관 제3장 제16조(용어정의)제4항)
 - 3. 위 제1호의 피보험자(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는 제외합니다)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혐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또는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제16조(용어정의) 제5항) 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제16조(용어정의) 제6항)가 있는 경우에 이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 1.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ㄱ.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L.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L.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다. 배상의부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 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ㅁ.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비.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2) 피보헊자의 범위

-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 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4.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 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 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 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 지 아니합니다.
 -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1. 타차 또는 타물체(제16조(용어정의) 제7항)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제16조(용어정의) 제8항)로 인 한 손해
 -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 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제3장 제16조 (용어정의) 제9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피보현차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디.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리.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그.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L.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제16조(용어정의) 제10항)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 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 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 (5)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70601600 1061000

제15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1) 일만 번색사	OF CONTRACTOR OF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① 대인배상 I ② 대인배상 I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그.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L.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합니다) 또는 그 부모아배우자 및 자녀
	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a. 위 'L' 및 'C'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다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보상합니다.
	모경됩니다. ㅂ.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
	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③ 대물배상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1. 포함계되시 또는 최도함시키 고기도 한만 단에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ज <u>ो</u>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
	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
	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
	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
	난 손해
	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04년 8월 22일이후 계약분부터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
	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8. 피모임자 중사를 시범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은 일하 도로준해시험요요로 사용하던 준 생기
0678	^{990°}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00	존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
	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T 七	
	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에 생긴 손해
	11.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12.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제3상 제16조(용어정의)제12항)에 생긴 손해 13.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제16조(용어정의)제12항)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등의, 도괴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등의 등액되지는 아니합니다.
④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
	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제16조 (용어정의) 제13항)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 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구 부	 비산하지 않는 경우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 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7.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8.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9.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 승 중 생긴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의한 상해 <i>6</i> 5 ²⁵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핵요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鈴ఄ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
	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
	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
	니다.
	9.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
	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
	에는 보상합니다.
	12.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다. 퍼모임사가 사용사의 접구에 당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I	서도심자리 사랑자 또는 최모임자리 사용사의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⑥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 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 로 인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인한 손해
06.5g.	7.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8.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장합니다.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
	해
	14.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
	합니다.
	1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
	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
	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
	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
	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16.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
	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
	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
	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
	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제16조(용어정의) 제14항)
	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7.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 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 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Q)
\subset	5
0	J
C)
-	-
4)
C)
-	-
-1	
C)
C	
Œ	5
-	-
-	5
ũ	5
O	5
-	-
- 1	
α	
0	Ĵ
à	

구 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
	고당 대인배상 I·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 I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
	였거나,
대인배상 I·Ⅱ	2.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
밎	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
대물배상	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
	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s [©]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Ⅱ ,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존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생긴 때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 친 때
자기차량 손 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②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1.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합니다.
 - 2.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3. 보험회사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4.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 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 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등을 통지합니다.
-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③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서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0	О	0	О	0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0	О	0	О	О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0	О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0		0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 량번호					0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О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					
<u> </u>				50.	0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 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628-19	60 ¹⁶³³	, \35 ¹ \3 ⁷	S.	0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0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0	0	0	О	0

-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1.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 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 2.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 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

- 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것으로 합니다.
- 4.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합니다.
- 5.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6. 보험회사는 위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7.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8.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 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 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③ 제출서류

432		
직접 청구시6필요 서류	대인배상 I ·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О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О	О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О	О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0	О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존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 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④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용어정의)

아래의 정의한 용어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1.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① 자동차보혐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 운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실제 손해액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④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⑤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

⑥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⑦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⑧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 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⑨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⑩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①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

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②)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우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②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③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용어정의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⑤ 차종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다.

16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 I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1천 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

① 사고유형별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유형을 차대차사고와 기타사고로 구분 하여약정한 자기부담금을 말하며 사고유형은 다음의 경우로 구분 합니다.

차대차사고 유형

- 1.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
- 2. 제 1.호에서 규정하는 타차는 그 등록방호와 운전자(소유자포 함)의 신분이 확인된 차량만을 말합니다.

☞ 기타사고 유형

- 1.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 2. 차량의 침수 또는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사고
- 3. 등록번호, 운전자 신분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못한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에 의한 사 고차량을 말합니다.

(18) 사고건수별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를 사고순번에 따라 구분하여 약정한 자기 부담금을 말합니다.

3-3. 기타사항

제18조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 1) 보험계약의 소멸
- ①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 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 ②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1.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 그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대체) 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다. 피보함차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근.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세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은 경우
- ㅂ.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2.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왕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 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 제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 1.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의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 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L)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

- (c)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 (ロ)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 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 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 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 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2.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6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2)의 제1항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않다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하≫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 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 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 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4.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제6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의 제1항, 2)의 제1항 또는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중 1)의 제3항, 2)의 제3항 등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 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 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①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 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②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
(
0
ò
(
Ť
L
C
т
-
C
C
č
T
0
C
C
т
-
C
C
è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 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의 씨는 의미도 한번 경투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③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

-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처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 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제16조(용어정의) 제15항)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됩니다.
-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충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 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u>해당기간</u> 365(윤년: 366)

제20조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등

대인배상 I·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①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제10조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 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 우에는 제10조 (배상책임) 중 1)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상한 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③ ① 및 ②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2) 보험회사의 대위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 리를 취득합니다.
 -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 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다.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자 위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 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 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재발원이 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받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제22조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 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 번호, 형식, 연식
- ②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 할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 ③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24조 (기타사항)

①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③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06:28-1960/633-135/3209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특별약관

1.자동차관련 특별약관

1-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1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1-2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 으로 사고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되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안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5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밖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6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3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43세미만위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3세묘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7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및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9.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았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 부터 발견될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 통약관)에 따릅니다.

1-10.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때로 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1-11.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하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한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가족** 이라 함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의 가족을 준용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형제자매** 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부모가 동일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및 그 부모의 양자, 양녀로 인한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메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2.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구 가족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그리고 기명 피보험자가 지정한 지정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 1.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 부모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추가지정된 지정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3.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구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지정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 의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추가 지정된 지정1인 운전자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4.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운전자(이하 "지정1인 운전자"라 하며, 기명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보험자 가 지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정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런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자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 통약관)을 따릅니다.

1-15.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당해자동차의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의 피보험자로 간주하며,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자기신체사고), 제12조(자동차상해), 제13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자기차량속해)에 대해서도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별약관" 및 "운전자한정 운전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위 (1)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발생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5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일반면책사항 제1호 대인배상 I, 제2호대인배상 I, 제3호 대물배상, 제4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제5호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제6호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의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일 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손해
- ④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 나 다친 손해
- ⑤ 당해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인 경우 그 피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

-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합니다.
- ①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판매사 원을 포함합니다.),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②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6. 상해간병비지원 특별약관Ⅱ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병비를 지원하여드립니다.

구분	1급 ~ 3급	4급 ~ 6급	7급 ~ 14급
고급형	500만원	200만원	10만원
기본형	100만원		10만원
실속형	100만원		-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

-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7. 자녀교육비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런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및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 표Ⅱ에서 정한 1급 후유장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1억원의 자녀교육 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및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 ③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 ④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다만, 1 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 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 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 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현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⑦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번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2) 상해가 보험금 수익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권자)

- (1)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청 구권자는 피보험자의 성인 자녀 또는 피보험자 자녀의 법정대리인 으로 합니다.
 - 다만, 피보험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금청구권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601633-13513209

1-18. 성형·치아보철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자동차상해)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 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형비용 및 치아보철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성형비용: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부위 1cm당 10만원을 1회에 한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안면부라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
- ② 치아보철비용: 피보함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아보철이 필요한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의 치아보철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보철을 하고 있었던 경우(틀니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 용 어 풀 이 >

-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9. 쾌유기워 및 안심용품지워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1) 쾌유기원 물품지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의 지급할 보험금이 정해진 경우 1사고당 회사가 정한 1개의 쾌유기원 물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안심용품 지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의 [11] 자동차상해 또는 [12]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1사고당 회사가 정한 1개의 안심용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8-19601633-13513209

제공물품 중에서 생산중단 등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용품 상당액에 해당하는 유사용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한하여 쾌유기원 물품 및 안심용품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

-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쾌유기원 물품과 안심용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0. 상급병실료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병실료 차액을 30일간을 한도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 이 약관에서 상급병실 이라 함은 특실까지를 의미합니다.
- (2) 제 (1)항의 경우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병실료 차액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병실료 차액이 다른 보험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제3조 (피보혐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은 말합니다.

<용어풀이 >

-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8-19601633-1351320

1-21.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런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 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 제1항(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렌트비용"이라 합니다)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피보형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렌트비용의 지급)

회사가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 각호의 렌트비용 인정기간을 한도로 렌트비용 인정기준액에 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①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전비업체에 유교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10일을 한도로 실제로 렌트를 한 기간으로 합니다.
-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남까지를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20%에 실제 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21-1.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제5조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 「렌트비용담보」의 '제2조 (보상내용)'에 의하여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이하 "렌트자동차"라 합니다.)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1항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이 특별약관 '제4조 (렌트비용의지급) 제1항'의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 ④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 및 제3항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3601692_19519900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2. 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보험기간 개시일이 피보험자동차의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3조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단, 도난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1.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
- ② 위 제1항의 신차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보험자동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제5조 (신차가액의 변경)

-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장 제19조(보험계약의 승계) 제2항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시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신차가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신차가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3. 차량 신규등록비용지워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도난사고를 제외합니다.)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

자기차량손해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 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초과수리비용지원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2) 도난으로 인한 존해

제4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4.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되었을 때에는 주행불능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합니다)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장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피보험자가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②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5. 초과수리비용지원 특별약판

제1조 (적용대상)

19601633-13513209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책임 개시일의 보험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 제1항(보상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6. 교통비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자 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 제1항(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타 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통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당해 자동차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임시교통비용의 지급)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임시교통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인정금액에 임시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① 임시교통비용의 인정기간
 -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런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0628-19601633-13513209

1-2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런 보통약관) 보통약관의 제 13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고 제14조(자기차량손해)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제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추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 ③ 위 제1항의 무보험자동차가 농업기계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 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 용어풀이 >

- 1. 이 특별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ㄱ.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 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 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 2. 위'1.'의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힘으로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2.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4.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

제5조 (비용)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6조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동차 손해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자동차1] 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2.대물배상 지급기준'및 '4.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이 특별약관 '제5조 (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 1.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동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물배상이나 공제계 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2.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중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배상액 명목으로 받은 금액
- 3.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 용어풀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보험자동차손해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 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 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 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7. 전쟁,내란,사변,폭동,소요,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 8. 지진,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9.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10.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합니다.
- 11. 손해를 입힌 배상의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2.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잞녀
- ④ 위 제3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 인 손해를 입한 무보험자동차를 위 제3항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보험자동차 손해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 (보상내용)'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 구를 한 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3.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발생사실이 신고 된 관할경찰서
- 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5.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 6.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이나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위 제1항의 서류 또는 증거를 받은 때 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2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8.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 가입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중인해당 다른 자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아니합니다.) 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제3의 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 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일반승용 및 다목적승용을 포함합 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3장 제19조(보험계약의 승계)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대체자동차
- ②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또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
-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 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있한 손해
-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지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 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집으로써 입은 손 해
- 7.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5조 (손해액의 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잔 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을 공제합니다.
-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 ④ 다른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

-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 한 손해
 - 4.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7. 다른 자동차에 생긴 흠.마모.부식.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8.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 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9. 도난으로 인한 손해
 -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 11.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다른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른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합니다).
 - 12.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에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 13. 다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다른 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다른 자동차 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②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 이라 함은 다른 자동차의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6조 (비용)

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7조 (보상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 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 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유형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용어풀이〉

- 이 약관에서 **사고유형별 자기부담금** 이란 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 유형을 차 대차사고와 기타사고로 구분하여 약정한 자기부담금을 말하며 사고유형은 다음의 경우로 구분합니다.
- 1. 차대차사고 유형
- ㄱ.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
- 니.위 ¬에서 규정하는 타차는 그 등록번호와 운전자(소유자포함)의 신분이 확인 된 차량만을 말합니다.
- 2. 기타사고 유형
- ㄱ. 피보험자동차 도난
- L. 차량의 침수 또는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 한 사고
- 다. 등록번호, 운전자신분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못한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에 의한 사고차량을 말합니

다.

②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 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 일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3항의 지급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위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 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11조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9. 애니카 패밀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이면서 승용자동차 또는 경·4종화물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이고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 (보상내용)

(1)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서 규정한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한 정비공장(이하 "우수정비업체"라 합니다.) 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되면 회사는 우수정비업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우수정비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다음의 항목 중 피보험자가 선택한 한가지를 국내에서 생산한 정품 기준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우수정비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서비스 항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엔진오일(오일필터 포함) 교환 단, 국내에서 생산된 배기량 3,000cc이하의 휘발유 또는 LPG를 사용하는 세단형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외의 차종을 제외합니다.
- ② 에어컨 항균필터 교환
- ③ 와이퍼블레이드 교체 및 부동액, 워져액, 각종 오일류(파워스티어링 오일, 브레이크 오일) 점검과 보충
- ④ 엔진룸 세척 (용해액을 사용하여 세척 후 물을 사용 마무리하는 세척)
- (2) 우수정비업체는 삼성화재(주)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또는 콜센터(1588-5114)를 통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경우)

우수정비업체의 부재 또는 우수정비업체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중요사항)

- (1) 회사는 2. 보상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우수정 비업체에 수리비와는 별도로 1만원을 지급합니다.
- (2) 피보험자가 해당 사고의 차량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할 경우 서비스 를 제공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1만원을 더하여 반환하여 야 합니다.
- (3) 우수정비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1회 입고당 1회에 한합니다. (1회 입고로 여러건의 사고를 처리할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은 1회 에 한정합니다.)

제5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호에서 정한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50%이상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액을 보상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0.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괴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목적 1종·2종승용자동차로서 괴보험자동차에 장착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31. 3년 신가보상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드리며,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① 출고당시 신차가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대인배상 I」,「대인배상 II」,「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
- ③ 이 보험계약(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보험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일"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2회에 걸쳐 갱신계약(이하 "갱신계약")을 체결 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신가 및 확대 보상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 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통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②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광진계약 체결당시의(갱신계약의 책임개시 시점을 말합니다.) 해당 분기에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가액보다 낮은 경우. 단, 외제차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의 표준감가상각 잔존율표의 내용년수 10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잔존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제1항 제2

제3조 (피보혐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3조(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피보형자동차의 대체시 계약 종료 및 보험료 환급)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8조 (보험계약의 승계) 제2항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시 규정에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1) 갱신계약은 '7.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의 제2항을 이 보험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을 포함합니다.) 의 자동종료 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것으로 합니 다.

(2) 위 '(1)'의 갱신계약 조건은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을 포함합니다.)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 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 만료일 30 일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제7조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을 포함합니다) 만료일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 통약관)을 포함합니다.) 만료일 이전까지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한 때에는 이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제8조 (자동갱신의 부적용 통지)

회사가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을 포함합니다.)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2. 외제차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I」,「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 제1항(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외제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경우 이하 "렌트비용"이라 합니다)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과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렌트비용의 지급)

회사가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 각호의 렌트비용 이정기간을 하도로 렌트비용 이정기준액에 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①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50일을 한도로합니다.

-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 일을 한도로 실제로 렌트를 한 기간으로 합니다.
- 다.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기준으

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20%에 실제 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32-1. 외제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제5조 (보상내용)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 「외제차 렌트비용」의 제1항(보상내용)에 의하여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이하 "렌트자동차"라 합니다.)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 (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위 '(1)'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이 특별약관 '2. 렌트비용의 지급' 제②호의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자동차를 반납한 때 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 (3)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뉴 수리비 및 교화가액만을 보상합니다.
- (4) 회사가 보상할 위 (1) 및 '(3)'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함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1) 및 '(3)'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 제1 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렌트자동차 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계 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 료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3. 외제차 운반비용자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I」,「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내용)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 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피보험자가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운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2)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차량운반비용」은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수리비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 목적, 금액,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4.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Ⅲ

제1조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운전(주차 또는 정차 중은 제외합니다)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발생된손해에 대해 이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은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의 상품으로 구분되며, 가입하신 상품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싱	·내 용	
	다)을 죽게 하기 검사에 의해 공 지급합니다.	거나 다치게 하여 소제기된 경우여 구기준]	여 구속영장에 네는 변호사보수	자녀는 제외합니 의해 구속되거나 등 등 방어비용을
① 방어비용	구분 약식기소	실속형 200만원	기본형 200만원	고급형 200만원
	정식기소	200단원 ②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말하며, 53조의 규정에	약식명령의 청 따라 정식 재판	가정에 의한 약식 구에도 불구하고 의 청구를 한 경

는 경우, 교통 고를 일으켜 는 제2항의 ⁼ 배상보장법 시 에서 피보험 ² 우에는 실제 다보험자자 공 합의금)을 반 한도액]	사고처리특례법 타인을 다치게 중상해를 입힌 니행령 제3조에서 자가 형사합의금 공탁금액을 보	자녀는 제외합 제3조 제2항 단 한 경우, 형법 경우에는 피해자 이 정한 상해급수 으로 지급한 금 상 한도액내에서 : 경우에는 지급
실속형 2,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기본형 2,0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고급형 3,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에 대한 위험을	을 발생하게 한 경	경우, 신체의 상
확정판결에 의 上도로 지급 실속형	하여 피보험자기 기본형 2천만원 한도	가 부담하는 고급형
	에 대한 위험을 또는 불치나 확정판결에 의 나도로 지급	실속형 기본형

③ 한 사고로 제2항의 보험금을 두가지 이상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이하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화 손해
-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8.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9.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분담)

제1조 보상내용 ②의 보험금 중「형사합의금」과「벌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 (보험금 청구시 제출 서류)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임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③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보혂금의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 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4-1.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Ⅲ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Ⅲ」의 제1조 (보상내용)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35.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3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조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및 '제13조 (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및 '제12조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 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 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 상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 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일반승용 및 다목적승용을 포함합 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 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 니다.
-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과 소유하거나 통상적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9조 (보험계약 의 승계) 제2항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제15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 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 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 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⑦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합니다.

⑧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3조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런 보 통약관)에 따릅니다.

1-36.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 책임-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 제1항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 (보상내용)

① 회사는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

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손해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 상 I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3.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5조 (보험기간)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 (보혂료의 청구 및 납입)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양수인은 위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7.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목적 1종·2종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제15조(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일반 면책사항)의 제2항 제5호, 제3항 제5호, 제4항 제9호,제5항 제5호, 제6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1-38. 대인사고처리 수습지워금 특별약과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대문배상)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관~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대인배상 I 또는 대인배상Ⅱ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고처리수습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기준(1사고당)	부상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사망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사고처리수습지원금	10 만원	100 만원

(주) 사망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수습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9. 대물사고처리 수습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대문배상)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그 손해중 수리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사고당 10만원의 사고처리수습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수리비용" 이라 함은 회사의 대물배상 지급보험금 중 수리비용 항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물을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0628-10601633-13513208

1-40.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애니카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애니카서비스를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이경우에는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애니카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애니카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비상구난서비스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 2. 위 '1.'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3.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치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적재정량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이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② 긴급견인서비스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조치시 교체에 따른 부품비용과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2.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함 수 있습니다.
- 3.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③ 비상급유서비스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LPG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확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잠금장치해제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단,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 차종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2.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⑤ 배터리 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⑤ 타이어교체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알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애니카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에는 애니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과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자동해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가입 후 애니카서비스를 5회(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6조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1. 애니카라이프 특별약과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애니카서비스
- 1. 비상구난서비스
 - 기.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 니. 위 'ㄱ'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과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C.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리.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치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적재정량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이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 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2. 긴급견인서비스

- 그.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조치시 교체에 따른 부품비용과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니. 위 '¬'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3. 비상급유서비스
- 기.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LPG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4.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기.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L.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5. 배터리 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6. 타이어교체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함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합니다.

② 애니케어서비스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를 통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차량진단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차량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별표>에 기재된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표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진단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정비 이력 관리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등을 기록한 정비 이력 통장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수리차량 운반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할 경우, 그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 한하여 수리후 피보험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피보험자동차를 운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라이닝, 타이어, 워셔액, 부동액, 각종오일 등과 같은 단순 소모품만의 교체 또는 보충은 수리로 보지 아니하며,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km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4. 차량관리 예약대행서비스
- 기. 등록대행 예약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를 이전,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등록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 나.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차량정비를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 다. 검사대행 예약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 리. 폐차대행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폐차대행 전문업체를 통하여 무상으로 폐차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 5. 실내세차 안내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업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와 기타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가입 후 위 제12조 제1항(애니카서비스)의 서비스를 5회(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받았을 경우에 그 시점부터 동 항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차량진단서비스 세부 항목

	진 단	함 목	
	기 본 🗸	서 비 스	
○ 엔진오일	○ 밋션오일	○ 브레이크액	○ 파워오일
○ 클러치	○ 클러치실린더	○ 부동액(냉각수)	○ 라디에이터호수
○ 팬벨트	○ 타이밍벨트	○ 배터리	○ 얼터네이트충전
○ 스타트모터	○ 브레이크패드	○ 브레이크라이닝	○ 주차브레이크
○ 에어컨(히터)	○ 점화플러그	○ 플러그배선	○ 경음기
○ 와이퍼블레이드	O 와셔액 (132 ⁰⁵	○헤드램프,안개등	○ 실내전구등
○ 브레이크등	○ 타이어공기압	○ 타이어마모	○ 소음기
○ 배기파이프	③ 예비타이어		
디젤차량 추가서비스		LPG차량	추가서비스
○ 경유필터 점검 및	내부수분 제거	○ 기화기점검	○ 타르 제거
○ 엔진압축압력 점검	겈	○ 가스유출여부 점점	<u> </u>

1-42. 애니카 안심지원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보험회사에 DtoD 애니카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DtoD 애니카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보헊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애니카서비스

- 1. 비상구난서비스
- 7.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청구됩니다.
- L. 위 '¬'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C.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라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치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적재정량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 (2)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이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 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 2. 긴급견인서비스
 - 기.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조치시 교체에 따른 부품비용과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니. 위 '¬'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하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3. 비상급유서비스
 - 기.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LPG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4.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기.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차량의 경우

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L.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5. 배터리 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당한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6. 타이어교체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합니다.

- ② 차량진단 Door to Door 서비스
 -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출장진단(Door to Door 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업체는 약정한 시기에 이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2. '1'의 경우 피보험자는 무상으로 이 특별 약관 <별표> 차량진단 서비스 세부항목에 기재된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표를 제공받으 실 수 있습니다.
 - 3. 차량진단후 피보험자가 지정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수리를 원하는 경우 정비업체는 수리완료 후 피보험자동차를 인도하여드립니다. 다만, 수리시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용어풀이>

출장진단(Door to Door 진단)이란 피보험자의 차량진단 편의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인수 및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인수 및 인도 장소는 동일해야 합니다.

0628-19601633-13513209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지역이나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인 경우와 기타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과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의 횟수의 제한)

- ① 애니카서비스
 - 비상 구난 서비스, 긴급견인서비스,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교체 서비스, 잠금장치해제 서비스의 이용 횟수는 서비스 항목과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총 5회(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까지 제공됩니다.
- ② 차량진단 Door to Door 서비스 진단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6조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청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차량진단 서비스 세부항목

엔진오일	밋션오일	브레이크오일	클러치액	부동액 및 냉각수
얼터네이터	배터리	각종호스	브레이크라이닝(전)	브레이크라이닝(후)
타이어(예비포함) 공기압	경음기	에어콘	히터	와이 퍼브러쉬
와셔액	파워오일	벨트류	주차브레이크	각종램프류

1-43.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6조(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제2항(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0628-19601633-13513209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 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 (보험계약의 부활)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 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위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 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 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

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조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 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 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자동납입)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③ 위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 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 정이체일로부터 〈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 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회납의 경우, 11회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서는 약정이체일로부터 1개월의 납입 유예기간을 둡니다.
- ③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④회사는 위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 ⑤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1	민납입보험료 입방법	2회	3회	4 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비	연속 2회납					1개월						
	2회납	4 개 월										
	3회납	2개월	4 개월									
년 연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13	13209			
속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 OOO	633				
납	6회납	1개월	1개월	2개 월	2개 월	3개월	B (50°					
	10회납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1회납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 유예기간을 말합니다.

0628-19601633-13513209

【별표-자동차1】

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 망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	1122	2 1 1 1 1 1	11 11	1 10 0	,		
	항 목		,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	,000,000	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우]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	세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	네미만, 60차	이상인 경우	<mark>는</mark> : 40,000,	000원
		나. 지급기	준				
		(1) 청구	권자의 범]위 : 피혀	배자의 부	모, 배우기	가, 자녀,
		형제	자매, 시부	보모, 장인	장모		
		(2) 청구	권자별 지	급기준			
						(단	위 : 만원)
		청구권자	게 스)	11 11) v.a	~l -ll -ll -ll	시부모.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				
		한 급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					
		_	는 실지급	청구권자	별로 각각	균등 차김	함
3.	상실수익액 (一升. 산정방	좌.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				
		제)에서	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				
		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					
		당하는	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	식 >				
		(월평균	P현실소득	액 - 생활	비)×취업	가능월수。	게 해당
		하는 리	ት 이프닛쯔	: 계수			
1		I					

항 목	지 급 기 준
	다.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한화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세법에 따른 관계증방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자휴가보상금 등을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항 목	지 급 기 준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
	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
	(상기 등이에 포스크비 (상기 등이 제) 기 구기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
	비율) - 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
	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
	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
	이 이 이 마기 사기의 그에서 이오그리기 이그
	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의 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 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용어둘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
	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

항 목	지 급 기 준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u>다만,</u> 부동산임대
	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
	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와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등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있장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
	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
	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
	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
	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
	함

항 목	지 급 기 준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
	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
	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
	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
	앤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18 ² 8-1 ³⁵ 10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다. ㅠㅂ//ㅇᆯㅜ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임. 나만, 법당, 단세협약 또는 기다 필도의 정단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건경 됨

항 목	지 급 기 준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표1〉에서 정한「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급로자 임금을 인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액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 〈산식〉 - 1 + 1 (1+i)² (1+i)² (1+i)²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 I 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으로 함

나.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 I 의 경 우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						
	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						
	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						
	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						
	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						
	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혚차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						
	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						
	(다) 피보함차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 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 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						
	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						
	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						
	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항 목	지 급 기 준							
2.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20 14 15							
	3 152 7 49 11 20							
	4 128 8 30 12 15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							
	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							
	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_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기간의 범취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한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							
	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							

O)
\subset	
0	J
C	0
-	-
4)
C)
-	-
23	2
33	
7	_
8	>
)
Q)
-	-
- 1	
α)
0	Ĵ
CC	
-	5

항 목	지 급 기 준						
	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④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⑤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기타손해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						
배상금	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1일 13,11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						
	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해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 I 의 경 우에는 <표3>에서 정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1 11 (31.07	11.4 9 5 9 9 11 5 2 5 1 1 1 1						
항 목	지 급 기 준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						
	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	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	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	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	만인 경우					
		(단위 : 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45%이상	400					
		45%미만~35%이상 240					
	35%미만~27%이상	200					
	27%미만~20%이상 160						
	20%미만~14%이상 120						
	14%미만~ 9%이상 100						
	9%미만~ 5%이상 80						
	5% 미만 50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2. 상실수익액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						
	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I	I						

항 목	지 급 기 준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기간					
	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					
	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					
	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					
	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④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⑤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요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					
	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					
	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기식된 1 사다					
	1					

항 목	지 급 기 준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 = 0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이 에당아는 식물인간 8대의 환자 또는 식구근경으로 이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
	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적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
	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
	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항 목	지 급 기 준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자동차 -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12월

<자동차 - 표 2>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 I - 책임보험을 보험 관련)

상해	보험가	입금액	상해	보험가	입금액
등급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등급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 분에 의함

<자동차 - 표 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 I -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보험가입금액		장해	보험가입금액	
등급		2005. 2. 22이후	등급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사고 적용		사고 적용	사고 적용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 해 구분에 의함

10801639_19E1990

2.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
	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
	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
	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
	여자동차 요금
	(나) 대여자통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하 차존으로 한 이하 같은) 효차로 일라표 범위
	소문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
	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
	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

항 목	지급기준
	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
	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가. 지급대상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
	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
	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 , _ , , , _ , _ , _ , _ , _ , _ , _ ,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0	
0	
C	
-	
4	
C	
-	
4	
C	
C	1
Ď	
+	
\subset	
ũ	
σ	
-	
- 1	
a	
ā	
CROR	
\simeq	
	è

항 목	지 급 기 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				
	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				
	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함)				
하락손해	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				
	급하고, 출고후 1년초과~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	보험가입금액		상해	보험가입금액	
등급	1,500만	3,000만	등급	1,500만	3,000만
1급	1,500만	3,000만	8급	180만	200만
2급	800만	1,600만	9급 ූ	ৣ ^{৻ঌ৾} 140만	200만
3급	750만	1,500만	10\\(\frac{10}{3}\)\(\frac{1}{2}\)\(\frac{1}{2}\)	120만	140만
4급	700만	1,400만	11급	100만	140만
5급	500만	1,000만	12급	60만	80만
6급	400만	800만	13급	40만	80만
7급	250만	500만	14급	20만	80만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 분에 의함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z] -j]		고 친 키	이 그 세			
장해	보험가입금액					
등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

4. 과실상계 등

항 목	지 급 기 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I」,「대인배상 II」,「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및「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 4>의 「동승 자 유형별 값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중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중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3	운행목적	감액비율
, , ,	강요동승		100%
승낙이 없는 경우	무단동승	13209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천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3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20%
있는 경우	입의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승용차 함께타기」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자동차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보험가입금액 급별 2005.2.21 2005.2.22 이전 사고 이후 사고	상 해 부 위	비고
1급 1,500 2,000 만원 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주체 분쇄성 골절 3.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급까지의 상 해내용중 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학몰골절로 신경학적	해당 등급보
	등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급까지의 상 해 내용중 단 순성 선상 골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 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
9628r, 96016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 3성 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	배상한다.
1688	에 손상이 심한 상해 (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 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지 이상의 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상해	보험가	입금액		
급별		2005.2.22 이후 사고	상 해 부 위	비고
	2005.2.21 이전 사고 800만원	이후 사고	상 해 부 위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위 3등급 (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한급높이 배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치 아 보 철 을 요하는 상해 가 중복된 경 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 서 각상해등 급별에 해당 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
3급	800만원	1,000 만원	 상박골 경부 골절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 구가 동반된 상해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 반된 상해 	

상해	보험가	·입금액			
급별	2005.2.21	2005.2.22	상 해 부 위	刊	<u> </u>
	이전 사고	이후 사고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		
			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		
			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		
			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		
			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		
			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		
			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		
			범하는 상해 (경골극 골절로 관		
			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		
			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		
			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		
			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		
			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		
			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 eg	수 술한 상해		
		3628-1960169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		
	(16 ²⁰	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		
			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		
			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		
			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		
			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		
			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		
			14. 개방성 중의 열성으로 양안구		

상해 보임가입금액 2005.2.21 2005.2.22 이후 사고 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해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0만원 20만원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급별 2005.2.21 2005.2.22 이후 사고 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9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때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장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희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	

상해 보험가	·입금액			
급별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상 해 부 위	비	고
		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 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 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900만원 1968 ¹ 1960 ¹⁶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 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골절을 포함한다)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흥관 삼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쪽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보험가	·입금액			
그由 2005.2.21	2005.2.22 이후 사고	상 해 부 위	月	고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5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경미한 상해		

상해 급별		입금액 2005.2.22 이후 사고	상 해 부 위	月	고
	이 선 사고	可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상해	보험가	입금액			
급별	2005.2.21	2005.2.22	상 해 부 위	비비	卫
-	이전 사고	이후 사고	는 상해		
8급	180만원	040 = 101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он	100만전	240만원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 술하지 아니한 상해		
			할 다시 아니만 경에 의 세고 고점	þ	
			2. 페르 르얼 2 조과저 타그		
			3. 下せき 皇下 4. オ가고(オ가고그 4章 케ㅂ 호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 곽내 탈구, 경우, 과부, 견봉돌		
			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		
			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		
			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		
			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		
			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상해	보험가	입금액			
급별	2005.2.21	2005.2.22	상 해 부 위	月	고
-	이선 사고	이후 사고			
9급	180만원	240만원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		
			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		
			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		
			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		
			(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		
			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청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460			
		3628-1960169	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620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全		
			- 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보험가		상 해 부 위	ㅂ]	,
급별		2005.2.22 이후 사고	/8 애 구 귀	нΙ	고
10亩	120만원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안정되는 상해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수지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외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	
11급	120만원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 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		

O	j
\subset	
320	J
C	0
-	-
4)
C)
-	-
- 1	
C)
C	3
23	5
-	-
-	5
8	5
ò	Κ
$\frac{\circ}{}$,
77	
u	
α)
0	7

상해 급별	보험가 2005.2.21 이전 사고	입금액 2005.2.22 이후 사고	상 해 부 위	刊	괴
			되는 상해		
12급	60만원	80만원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60만원	80만원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60만원	80만원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별표-자동차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장해	보험가	입금액	
급별		2005.2.22 이후 사고	신체장해 195 ¹³⁰ 비고
1급	8,000	10,000	
	만원	만원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이상 있는 경우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에는 중한 신체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장해에 해당하는
			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장해등급보다 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급 높이 배상한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다.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2. 시력의 측정은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국제적으로 인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정되는 시력표
			잃은 사람 에 의하며, 굴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 절이상이 있는
			게 된 사람 사람에 대하여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는 원칙적으로
			잃은 사람 교정시력을 측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 정한다. 하게 된 사람
2급	7,200	9,0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3. "손가락을 잃는
	P원	만원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것"이란 엄지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 손가락에 있어
			하로 된 사람 서는 지관절,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 기타의 손가락
			은 사람 에 있어서는 제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잃은 경우를 말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한다.
			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4. "손가락을 제대
I	I		

장해	보험가	입금액		_
급별		2005.2.22	신 체 장 해	비고
	의선 자고	이후 사고	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로 못쓰게 된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것"이란 손가락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	의 말단의 2분
			아야 하는 사람	의1 이상을 잃
				거나 중수기관
3급	6,400	8,0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절 또는 제1지
	만원	만원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관절(엄지손가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	락에 있어서는
			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지관절)에 뚜렷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한 운동장해가
			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있는 경우를 말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	한다.
			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5	' '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의 전부를 잃은
	5.000	7.000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경우를 말한다.
4급	5,600 만원	7,0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 "Hlalalo alal
	반원	반원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5.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된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도 웃쓰게된 것"이란 엄지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	첫 이런 급시 발가락에 있어
			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실기 기계 있기 서는 끝관절의
			청류을 완전히 잃은 사람	2분의1 이상을,
			4 하 파우 파꾸키과저 이사에서	기타의 발가락
		3628-1960169	잃은 사람	에 있어서는 끝
		628-1903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관절 이상을 잃
		00	잃은 사람	은 경우 또는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중 족지 관절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제1지관절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	(엄지발가락에
			서 잃은 사람	있어서는 지관
				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

장해	보험가	입금액		
급별		2005.2.22	신 체 장 해	비 고
		이후 사고 6.0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은 경우를 말한
5급	4,800 만원	6,000 만원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주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수 없는 사람 	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 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6급	4,000 만원	5,0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된 사람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그외의일을 다른 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

장해	보험가	입금액		_
급별	2005.2.21	2005.2.22	신 체 장 해	비고
	이전 사고	이후 사고	r 키즈세 따러된 기천시나 따러	간"은 의사가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	
			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하는 노동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	· ·
			이 못쓰게 된 사람	기준으로 하여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	타당한 기간으
			절이 못쓰게 된 사람	로 한다.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11. "제대로 못쓰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	
			람	정상기능의 4
7급	3,200	4,0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 ·
' =	U 원	+,000 만원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상실한 경우를
	간건	간건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이란 정상
			사람	기능의 2분의1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경우를 말하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장해가 남은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것이란 정상기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외	이상을 상실한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경우를 말한다.
			5. 흆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상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	
		3628-1960169	하지 못하는 사람	
		628-190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	00	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	
			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FB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	
			7. 안 본의 5개의 논가락 모든 됨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장해	보험가	입금액		,	
급별		2005.2.22	신 체 장 해	비]	고
	이선 사고	이후 사고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 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 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2004.8.22일 이후 사고에 대하여는 '여자'를 '사람'으로 대체 적용)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	
8급	2,400 만원	3,000 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 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장해 급별	2005.2.21	입금액 2005.2.22	신 체 장 해	비	고
3 에 별 9 급	2005.2.21		신체 장해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	Η]	<u></u>
	(J68 ²⁶ -196016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모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장해	보험가		 신체 장해	日	卫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전 제 경 때	Ηļ	77
	1 2 7 2		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		
			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f님		
			` [
			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사람		
10급	1,500	1,880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만원	만원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		
			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		
			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ı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		

장해	보험가	입금액			
급별		2005.2.22	신 체 장 해	비	고
H TEP	이전 사고	이후 사고	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 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만원	1,500 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착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장해 보험가	입금액			
그벼 2005.2.21	2005.2.22 이후 사고	신 체 장 해	月	고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 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 쓰게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보철을 한 사람		
12급 1,000 만원	1,250 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		

크 申 2005.2.21	-입금액 2005.2.22 이후 사고	신 체 장 해	月	卫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 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 자(2004.8.21일 이전 사고에 한하여 적용)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2004.8.22일 이후 사고에 대 하여는 '여자'를 '사람'으로 대 체 적용)		
13급 800만원	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		

장해	보험가	입금액		,	
コロ 2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신 체 장 해	비	고
		630만원	응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모생의 결손이 남은 사람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동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성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외의 손가락의 다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외의 손가락의 근가락의 무관점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	

3209
13510
633-
19601
0628-

장해 <u>보험</u> 급별 ^{2005.2.2} 이전 사고	신 체 장 해	비]	고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2004.8.21일 이전 사고에 한하여 적용)		





Memo

0658-10801633-13513509

0628-1960 1633-13513209